

발간등록번호 11-1790387-000346-10

2022년

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안내



질병관리청

목 차

Contents

PART I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 비전 및 목표	3
3. 핵심지표	4
4. 추진 체계 및 주요 기능	5

PART II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 사업목적	10
2. 사업대상 및 소요예산	10
3. 사업내용	11
4. 행정사항	13
5. 2022년 중점 관리사항	15

2022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안내

PART Ⅲ. 붙임자료

【붙임1】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업계획서	18
【붙임2】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	25
【붙임3】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자체평가 기준	41
【붙임4】 위촉장	42
【붙임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43
【붙임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47
【붙임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	57
【붙임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95
【붙임9】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17
【붙임10】 중앙 개발 콘텐츠 활용 계획	129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31

PART Ⅳ. 부 록

【부록1】 관련 지표	136
【부록2】 질환 정의	137
【부록3】 관련 통계	141
【부록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경과	146

2022년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요		
핵심 지표	3. 핵심지표	3. 핵심지표 * HP2030 반영<변경>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업 내용	3. 사업내용 3-1 필수사업 다.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대상 근거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전략 교육 및 자문 실시 ※ 필요시, 질병관리청에서 관련 교육자료 및 근거평가(체계적 문헌고찰) 지원	3. 사업내용 3-1 필수사업 다.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대상 근거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전략 교육 및 자문 실시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홍보자료 <교육자료> 또는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www.guideline.or.kr)에서 교육 참고 자료 다운로드 가능<변경>)
붙임 자료	[붙임 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	[붙임 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변경>
	[붙임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	[붙임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변경>
	[붙임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붙임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변경>
	[붙임 10] 중앙 개발 콘텐츠 활용 계획	[붙임 10] 중앙 개발 콘텐츠 활용 계획<변경>
부록	[부록 1] 관련 지표 ○ HP2020 목표지표	[부록 1] 관련 지표 ○ HP2030 목표지표<변경>
	[부록 3] 관련통계 ○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관리 실태	[부록 3] 관련통계 ○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관리 실태 ※ 산출 연령기준 변경 반영(만30세이상→만19세이상)<변경>
	[부록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경과	[부록 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경과<변경>

Part I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비전 및 목표

3. 핵심지표

4. 추진 체계 및 주요 기능

Part I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질병부담이 크고 주요 사망원인**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허혈성, 출혈성)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총칭

- 심뇌혈관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1/5 차지
 - 심장질환 사망률 63.0%, 뇌혈관질환 사망률 42.6%(통계청, 2020)
- 고혈압, 당뇨병 등 선행질환 유병률 및 진료비 증가 추세
 - 단일상병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 사용 1, 2위(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2020, 국민건강통계 2020)
 - ※ 고혈압 유병률 20.1%(14) → 22.92%(20), 진료비 2.4천억원(02) → 3.9조원(20)
 - ※ 당뇨병 유병률 9.3%(14) → 10.7%(20), 진료비 1.6천억원(02) → 2.9조원(20)

나. **인구 고령화로 노인 환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

- '20년 노인진료비는 37조 6,135억원으로 '16년에 비해 1.5배 증가
 - 노인진료비 상위 질환은 고혈압, 대뇌혈관질환, 골관절염, 당뇨, 치매 순
 - ※ 노인인구 추계 : ('09) 9.9% → ('15) 12.9% → ('20) 15.6% → ('25) 19.9% → ('30) 24.3%
 - ※ 노인진료비 추계 : ('09) 31.4% → ('15) 37.9% → ('20) 45.6% → ('25) 56.1% → ('30) 65.4%

다. **외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관리정책의 수정 및 보완 필요**

-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따른 일차의료 활성화, 보건소 통합서비스 시행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정책 환경 조성
 - ※ 현행 의료제도는 급성기 질병에 적합한 구조로 만성질환 관리에 미흡
 - ※ 적절한 정책으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 예방가능(WHO)
- 고혈압, 당뇨병의 인지율, 치료율 증가 등 국민 관심도 향상, 제1차(2018-2022)심뇌혈관 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기반 단계적 확충
 - ※ 고혈압,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부록3> 참조

2 비전 및 목표 <제1차(2018년-2022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5년 후 달라지는 주요지표>

분야	성과지표	현재('18 기준)	목표('22)
① 인식개선	증상 인지율	급성심근경색	45.5% ('17) / 55%
		뇌졸중	51.2% ('17) / 61%
② 고위험군관리	조절률	고혈압	46.2% ('13-'15) / 50.0% ('18-'20)
		당뇨병	26.6% ('13-'15) / 35.0% ('18-'20)
③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치명률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급성심근경색	8.1% ('14) / 7.5% ('22)
		출혈성 뇌졸중	7.5% ('16) / 6.6% ('22)
④ 재활	급성심근경색 조기재활 시행률	40.0% ('17)	50% 이상
	뇌졸중 조기재활 시행률	75.4% ('17)	80% 이상
⑤ 인프라	국가통계 산출	-	승인통계 생산

3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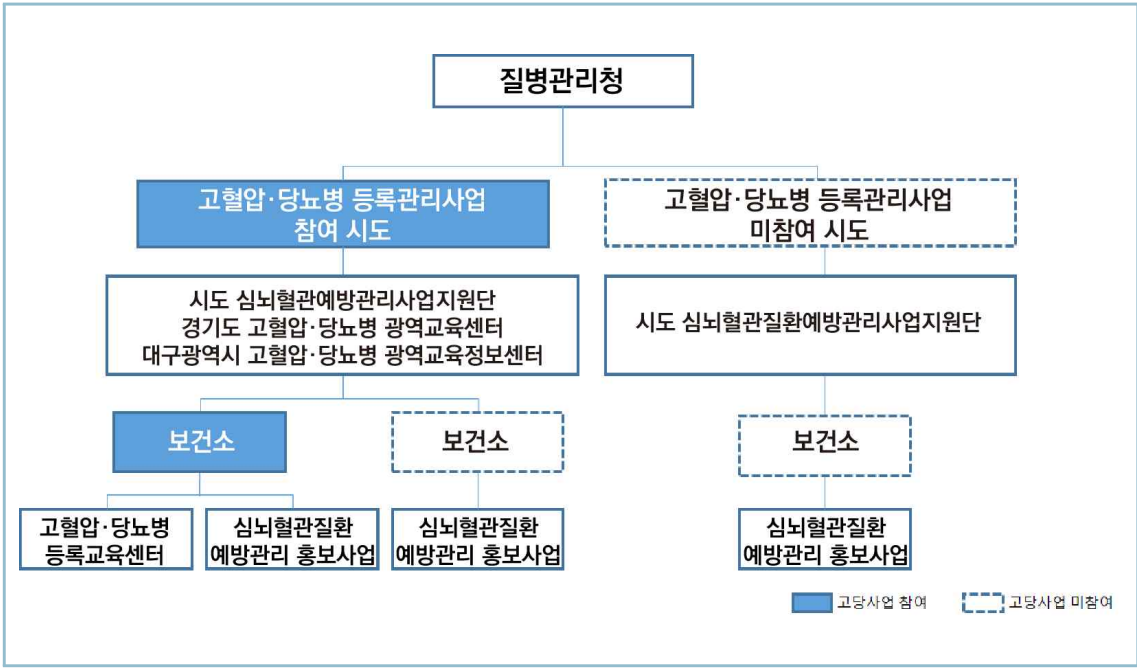
대표지표	'18	'19	'20	'30년 목표
성인남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27.6%	25.5%	28.6%	32.2%
성인여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18.3%	18.5%	16.8%	22.1%
성인남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11.2%	11.1%	13.0%	11.9%
성인여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7.1%	8.0%	8.2%	6.9%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5%	-	50.4%
형평성 지표	'18	'19	'20	'30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3.8%p	5.1%p	5.4%p	4.4%p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6.6%p	1.5%p	2.0%p	7.5%p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4.4%p	0.9%p	6.7%p	3.4%p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5.0%p	2.4%p	6.0%p	4.4%p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3.1%p	-	17.5%p

※ 자료원 : 2020 국민건강통계, 2019 응급의료 현황통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 연령표준화 당뇨병 유병률(공복혈당 기준)

※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 산출 연령기준(만19세이상)

4 추진 체계 및 주요 기능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조직 체계〉

가. 보건복지부

-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총괄 조정
- 심뇌혈관질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설치·운영

나. 질병관리청

-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및 기술지원
 -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 심뇌혈관질환 관리 담당자 및 교육·상담인력의 교육 및 양성 계획수립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 및 관리
- 심뇌혈관질환감시체계 구축·운영 및 통계 생산·관리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예산편성 및 집행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다. 광역자치단체(시도)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예산 편성, 계획 수립 및 시행, 자체평가
- 시·군·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도·감독 및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을 통한 기술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 자체 인력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시행·조정
-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라. 광역자치단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정책 자문
 - 시·군·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 인력 교육 계획 수립·시행 지원
 - 기타 시도 부의사항
 - ※ 대구광역시, 경기도는「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대신 각각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설치 운영
- 질병관리청 지정「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운영
 - 지역사회 환자용 교육교재 및 전문인력 교육교재 개발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담당자 및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자체 계획수립·시행 및 평가
 - 지역사회 교육홍보사업
 - 환자조기발견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

-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서 실시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인력 교육·훈련에 참여

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실시 지역은 시·군·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운영

I

II

III

IV

Part II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 사업목적

2. 사업대상 및 소요 예산

3. 사업내용

4. 행정사항

5. 2022년 중점 관리사항

Part II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 사업목적

-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략개발, 대규모 홍보,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만성질환 관리 강화
- 시·군·구 보건소 사업 기술지원, 담당인력 교육 등을 통한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도모

2 사업대상 및 소요 예산

- 사업대상 질환
 -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 심뇌혈관질환 : 뇌졸중, 심근경색 등
- 사업대상 : 시도 지역사회 주민전체(고위험군, 환자 및 환자 가족 등)
- 사업수행주체 : 광역자치단체(시도)
- 사업방식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위탁 운영 등
 - 시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가능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2021.12.31. 개정)
 - 단, 경기도, 대구광역시는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대신 각각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 ※ <붙임 4> 위촉장 양식 참조
- 사업예산 : 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내용

3-1. 필수사업

가.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시도 주관)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협의체」구성 및 정례회의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필수운영)

※ 코로나19 등 지역상황에 따라 비대면 회의로 운영 가능

- (구성)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의 기관장 및 담당자, 그 외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역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국가건강검진사업,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여건에 맞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발전 방향 모색
- (운영) 관련 회의록은 연말 실적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보고
 - ※ 시도 담당 공무원이 협의체 회의를 주관하여 운영

-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나.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사업

- 교육·홍보 및 캠페인 등 수행 중앙·지역 공동 캠페인 수행 등

- 단, 중앙·지역 공동 캠페인에 참여 권고
 - ※ 중앙·지역 공동 캠페인이란?
 -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특정 기간을 정하고 주요 홍보 메시지를 선정하여 중앙과 지역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함 <부록4 참조>
 - ※ 대국민 질환 인지 수준 향상 캠페인을 위해 필요 시 홍보물품 제작 가능

다.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대상 근거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전략 교육 및 자문 실시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홍보자료<교육자료) 또는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www.guideline.or.kr)에서 교육 참고자료 다운로드 가능

● 시·군·구 담당자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에서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 기초이론 교육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담당자는 3단계 교육과정 (기초이론교육, 심화이론교육, 실습교육)을 순차적으로 이수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전문인력은 2단계 교육과정(심화이론교육, 실습교육) 순차적으로 이수(교육센터 직원 필수교육)

* 고당 사업 전국 확대 시, 시도 지원단은 3단계 교육과정을 각 시도별로 총괄 운영

구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교육명	기초이론교육	심화이론교육	실습교육
교육기관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	-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
교육대상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 시·군·구(보건소) 사업담당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전문인력 - 시·군·구(보건소) 사업 담당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전문인력 - 시·군·구(보건소) 사업 담당자
교육시기	상시운영	연 4회 이상 (3월~11월)	연 10회 이상 (3월~11월)

※ 기본(기초이론교육)과정은 시도에서(보건소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구성) 수립하여 교육운영

※ 시도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위탁운영 가능

※ 심화과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수립하여 교육시기 및 교육프로그램 등 자세한 교육계획 별도 공지 예정

● 주민대상 교육강사 풀 구축 및 시·군·구 지원

라.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 평가

- 시·군·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사업 기획,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예산 집행, 보건소 사업 기술지원 수요도 조사 등)

● 시·군·구의「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시도 및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 보건소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현황 보기 가능

※ [별첨] '사용자매뉴얼(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지원시스템)_시도' 참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로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 → 질병관리청의 승인 완료 후 관할 보건소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현황 보기 가능(환자 등록률, 의료기관·약국 참여율 등)

- 시·군·구별 건강 및 질환 수준 통계자료 생산 및 보급(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사망자료 등 활용)
-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평가대회, 현장점검, 포상 등 인센티브 지급 등)
 - ※ 시·군·구 실적 평가: 지역사회 예방교육·홍보 및 조기발견사업, 환자등록현황 등 실적 반영하여 평가
[참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안내서]

3-2. 선택사업

가. 기타 지역 특화 사업 수행 등

- 시도별 사업 환경에 맞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발 및 수행
- 시도 사업 운영비(자문회의 운영비, 여비 등)

4 행정사항

가.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 및 의견 송부

- 질병관리청(만성질환예방과)은 연도 말에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3 서식> 평가 기준에 따라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당해 연도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승인 및 검토의견을 시도에 통보

나.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시도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사업계획서를 다음 해 제출 요청일까지 질병관리청(만성질환예방과)으로 제출
 - ※ 의견이 다른 경우, 수정사업계획서 확정 전까지 의견 제출 가능
-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위탁기관명, 단장(성명, 연락처, 이메일)도 함께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후 위탁기관이 선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으로 별도 통보 바람
- 시도는 본 지침 및 질병관리청 검토의견에 위배되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추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에 의한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은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 조치 실시

다. 예산편성 및 집행

- 시도는 <202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수탁기관의 관리비는 전체 예산의 6%이내 편성·집행
 -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32조>에 근거하여 처리
-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2017.1.1.부터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예정(부록9 참조)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교육교재 자료실을 통해 개정 매뉴얼 수시 확인

라. 예산내역 변경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업비 내 비목별 산출내역 조정이 20% 미만일 경우, 조정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질병관리청으로 통보
- 그 외 변경 사항은 별도로 질병관리청으로 승인을 얻어야 함

마. 기타 행정사항

- 범정부적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이 조기에 착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상반기 집행률 목표: 60% 이상)
- 정산보고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회계법인 등을 통한 위탁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보고서를 수탁기관은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고 사업비의 집행액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구분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정산보고(서식)에 의거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 ※ 위탁정산수수료(회계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추진
 - * 회계정산수수료: 전문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발생된 비용
 - ※ 국고보조금 정산은 반드시 전문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정산 실시



관계증빙서류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2022년 중점 관리사항

-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시 자체 평가 후 내용을 필수 포함
 - (예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에 있어 <붙임 8>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 철저
 - 부정 수급 방지, 민간사업에 대한 지침 교육 등

I

II

III

IV

Part III

붙임자료

【붙임1】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업계획서

【붙임2】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

【붙임3】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자체평가 기준

【붙임4】 위촉장

【붙임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붙임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붙임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

【붙임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붙임9】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붙임10】 중앙 개발 콘텐츠 활용 계획

【붙임1】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업계획서

○○ 년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업계획서

시도 명				
시장·도지사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계획서 작성 담당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FAX	
사업예산	총 사업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사업기간	○○. ○. ○ ~ ○○. ○. ○			
<p>위와 같이 ○○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기 관 장 서 명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질병관리청장 귀하</p> <p>* 사업계획서 전자파일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p>				

요 약 문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기대효과	

I

II

III

IV

본 문

I. 일반현황

1. 주요 만성질환 현황 및 관리실태

- 지역사회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유병률, 관리실태 등 관련 보건지표 및 자료 출처 제시

2.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인력 및 조직 현황(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인력 포함하여 작성)

- 담당조직 명 : () 계, 조직도 첨부
- 담당인력

성명	고용형태	자격내용	담당업무	만성질환 업무비중(%)
계				

-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 인력 전체를 기술
- ※ 고용형태: 공무원은 '직렬 및 직급'을 기술하고, 그 외 인력은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업무대행, 민간위탁인력 등으로 기술
- ※ 자격 내용: 인력의 전문자격을 기술(예: 간호사, 영양사, 의사 등)
- ※ 만성질환 업무비중(%) : 전체 업무 중 만성질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표기

II.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계획

1. 추진배경

- 해당 사업을 선정한 이유를 기술

2. 그간의 추진실적

- 연속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기술

3.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별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목표 기술

4. 세부사업추진계획

가.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

- 전년대비 사업 내용 비교 및 지속사업과 신규사업 제시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반드시 기술(기본 과정)

나.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

- 사업추진과 관련된 논리모형을 함께 제시

다. 추진체계

라. 시도 사업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마. 추진일정

- 사업별 주요 추진일정을 월 단위로 기술

바. 사업예산(국비 50%, 지방비 50%)

- 예산 개요

(단위 : 만원)

'21년 예산(국비)	'22년 신청액(국비)	비고

- 사업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기술(국비와 지방비 포함)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홍보사업 : 50백만원
 - 통계자료 생산 및 보급 : 25백만원
 -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5백만원
 - 기타 지역 특화 사업 : 50백만원

- 사업예산을 비목별로 기술(국비와 지방비 포함)

〈산출내역〉

구분	보조비목	보조세목	금액(원)	비율(%)		
				구분	전체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위탁사업비)	인건비(110)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210)		0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000,000,000			
		피복비	000,000,000			
		급량비	000,000,000			
		특근매식비	000,000,000			
		임차료	000,000,000			
		유류비 등	000,000,000			
		재료비	000,000,000			
		복리후생비	000,000,000			
		시험연구비	000,000,000			
		일반용역비	000,000,000			
		관리용역비	000,000,000			
		기타 운영비	000,000,000			
		여비(220)		000,000,000		
			국내여비	000,000,000		
		업무추진비(240)		00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00		
	유형자산(430)		000,000,000			
		자산취득비	000,000,000			
	교육센터운영비 총계			100		
	전체 총액				100	

〈세부 산출내역〉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지원단 운영비 총계	000,000,000	
(110) 인건비	000,000,000	
(110-01) 보수 (110-02) 기타직보수	00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000,000,000원 - 000,000,000원×0인×00월=000,000,000원 • 단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0인×00월=000,000,000원 - 000,000,000원×0인×00월=000,000,000원
(110-05)기타인건비	000,000,000	*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210) 운영비	000,000,000	
(210-01) 일반수용비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000자료 : 00,000원×00부=000,000원 - 000자료 : 00,000원×00부=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센터 7주년 행사 안내문: 00,000원×00부=000,000원 - 고당사업 안내문 : 00,000원×00부=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 : 000원×000개=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책상 및 의자 수선비 : 000원×000개=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수수료 : 000원×0개×0개월=000,000원 - ○○○사용료 : 000원×0회=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회계정산위탁수수료 : 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등

I

II

III

IV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 전화요금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210-03) 피복비	0,000,000	
(220) 여비	000,000,000	
(220-01) 국내여비	0,000,000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출장 - 0,000원×0명×0회=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출장 - 0,000원×0명×0회=000,000원
(240) 업무추진비	000,000,000	
	000,000,000	
(430) 유형자산	000,000,000	
	000,000,000	

5. 전문인력 교육훈련 계획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사업 개선 자문회의 개최 계획(분기별 1회 이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할 내용 기술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포럼 등 회의 개최 계획 기술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협의체 등 회의별 자문위원 명단(기관, 직책, 성명 등)
※ 시도 심뇌혈관질환 담당공무원이 주관하여 진행

7.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8. 사업의 기대효과

【붙임2】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

○○ 년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

시도명				
시장·도지사	성명		전화번호	
실적보고서 작성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예산	총 사업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사업기간	○○. ○. ○ ~ ○○. ○. ○			
<p>위와 같이 ○○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기관장 서명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질병관리청장 귀하</p>				
* 사업실적보고서 전자파일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I. ○○년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

4. 주요 사업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사업성과 비교

Ⅱ. 사업 실적

1. 예산집행 실적

1) 예산 개요

(단위: 만원)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 집행부진사유 등

2) 예산 집행 실적을 세부사업별로 기술(국비와 지방비 포함)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사업 : 25백만원
-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5백만원
- 기타 지역 특화 사업 : 25백만원

3) 사업예산을 비목별로 기술(국비와 지방비 포함)

〈집행내역〉

구분	보조비목	보조세목	금액(원)	비율(%)		
				구분	전체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위탁사업비)	인건비(110)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210)		0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000,000,000			
		피복비	000,000,000			
		급량비	000,000,000			
		특근매식비	000,000,000			
		임차료	000,000,000			
		유류비 등	000,000,000			
		재료비	000,000,000			
		복리후생비	000,000,000			
		시험연구비	000,000,000			
		일반용역비	000,000,000			
		관리용역비	000,000,000			
		기타 운영비	000,000,000			
		여비(220)		000,000,000		
			국내여비	000,000,000		
		업무추진비(240)		00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00		
	유형자산(430)		000,000,000			
		자산취득비	000,000,000			
	교육센터운영비 총계			100		
	전체 총액				100	

〈세부집행내역〉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지원단 운영비 총계	000,000,000	
(110) 인건비	000,000,000	
(110-01) 보수 (110-02) 기타직보수	00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000,000,000원 - 000,000,000원×0인×00월=000,000,000원 • 단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0인×00월=000,000,000원 - 000,000,000원×0인×00월=000,000,000원
(110-05)기타인건비	000,000,000	* 강사로,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210) 운영비	000,000,000	
(210-01) 일반수용비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000자료 : 00,000원×00부=000,000원 - 000자료 : 00,000원×00부=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센터 7주년 행사 안내문: 00,000원×00부=000,000원 - 고당사업 안내문 : 00,000원×00부=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 : 000원×000개=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책상 및 의자 수선비 : 000원×000개=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수수료 : 000원×0개×0개월=000,000원 - ○○○사용료 : 000원×0회=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회계정산위탁수수료 : 000,000원
	0,000,000	•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등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 전화요금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210-03) 피복비	0,000,000	
(220) 여비	000,000,000	
(220-01) 국내여비	0,000,000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출장 - 0,000원×0명×0회=000,000원
	0,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출장 - 0,000원×0명×0회=000,000원
(240) 업무추진비	000,000,000	
	000,000,000	
(430) 유형자산	000,000,000	
	000,000,000	

2.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참여인력 및 조직 현황

- 담당조직 명 : () 계, 조직도 첨부
- 담당인력

성명	고용형태	자격내용	담당업무	만성질환 업무비중(%)
계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 인력 전체를 기술

※ 고용형태: 공무원은 '직렬 및 직급'을 기술하고, 그 외 인력은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업무대행, 민간위탁인력 등으로 기술

※ 자격 내용: 인력의 전문자격을 기술(예: 간호사, 영양사, 의사 등)

※ 만성질환 업무비중(%) : 전체 업무 중 만성질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표기

3. 사업목표 달성 정도

사업내용	당초목표	달성목표	달성도(%)	비고
				* 달성부진 사유 등

4. 세부 사업실적

-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추진실적 작성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경과, 추진효과 등)

5. 교육 추진 실적

교육과정	교육대상	주관기관	교육시간	계획인원	참석인원	이수율(%)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 시도가 자체 시행한 교육만 기재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사업 개선 자문회의 개최 실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한 내용 기술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포럼 등 회의 개최실적 요약
(횟수, 주요결과 등)
-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협의체 등 회의별 자문위원 명단(기관, 직책, 성명 등)
※ 회의결과 첨부

7. ○○년 사업 자체평가 결과

- 성과(*계획 대비 사업성과 비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게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게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 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I

II

III

IV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 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감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 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증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 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I

II

III

IV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파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운영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운영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 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지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I

II

III

IV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지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트니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시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 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 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I

II

III

IV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 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 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용자금 (450)	용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용자해주는 용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용자 해주는 용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용자금 4. 기타 용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예치금 및 유가증권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유가증권 매입 (470)	매입 (01)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 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I

II

III

IV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붙임3】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자체평가 기준

구분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배점
I. 2021년 추진실적	총점		100
	I-1. 사업 목표 달성도	I-1-1. 사업 계획 목표 대비 달성도(10점)	10
	I-2. 세부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I-2-1. 시·군·구 사업 기술 지원의 적절성(20점)	60
		I-2-2.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사업의 적절성(30점)	
		I-2-3. 기타 특화 사업의 적절성(10점)	
	I-3. 사업 수행의 적절성	I-3-1.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관련 사업 연계 노력(5점)	10
		I-3-2.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노력(5점)	
	I-4.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I-4-1. 예산집행 및 인력의 적절성(10점)	10
	I-5. 실적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I-5-1. 실적보고서 작성의 충실성(10점)	10
	II. 2022년 추진계획	총점	
II-1. 사업 목표 및 내용 이해		II-1-1. 사업 목표 및 내용 이해(10점)	10
II-2. 세부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II-2-1. 시·군·구 사업 기술 지원의 적절성(20점)	60
		II-2-2.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사업의 적절성(30점)	
		II-2-3. 기타 특화 사업의 적절성(10점)	
II-3. 사업 방법의 적절성		II-3-1.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관련 사업 연계 방안 제시(5점)	10
		II-3-2.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5점)	
II-4.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II-4-1. 예산편성 및 인력의 적절성(10점)	10
II-5. 계획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II-5-1. 계획보고서 작성의 충실성(10점)	10

I

II

III

IV

【붙임4】 위촉장

위 촉 장

○○○대학교

교수 ○○○

귀하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단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20○○년 ○월 ○일

○○○ 시·도지사

【붙임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00%(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회계(○○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사회복지	000 ○○○○○	000 ○○○○○	000 ○○○○○	000 ○○○○○	000-00 ○○○○○

□ 교부결정내역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 ○○. ○○

질병관리청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붙임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p>제2조(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부전 2. 부정맥 3. 뇌동맥류
<p>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p>		

I

II

III

IV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장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예측 2.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9. 11.>

I

II

III

IV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3.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제6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화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9. 12. 3.,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 8. 11.>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④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I

II

III

IV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p>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p> <p>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역학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학조사의 시기: 특정 지역·계층 또는 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것 2. 역학조사의 방법: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역학조사의 내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p>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p> <p>나. 심뇌혈관질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p> <p>다.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p> <p>라. 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p> <p>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p> <p>③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p> <p>④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p>	
제9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	제5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제6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한다)의

I

II

III

IV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p>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 보건복지부장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p>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p>	<p>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p> <p>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혈관 중환자실 심뇌혈관 조영실(造影室) 뇌졸중 집중치료실 심초음파 검사실 심뇌혈관 재활치료실 심뇌혈관 예방관리실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과 전문의 3명 이상 신경과 전문의 3명 이상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예방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운영기준: 심뇌혈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24시간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체제를 갖추는 것 <p>②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운영계획서 3. 재정운용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제11조(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I

II

III

IV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1.]	제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2. 삭제 <2020. 9. 11.> 3. 삭제 <2020. 9. 11.> 4. 삭제 <2020. 9. 11.> 	

【붙임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p>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10. 26.]</p>

I

II

III

IV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8., 2017. 7. 26.></p> <p>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p>	
<p>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p>	
<p>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7. 25.]</p>	
<p>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 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small>[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small>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small>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small>[전문개정 2011. 10. 26.]</small>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mall>[전문개정 2011. 7. 25.]</small>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3. 31.> <small>[전문개정 2011. 7. 25.]</small>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p>	<p>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p> <p>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4. 28.></p> <p>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p>
<p>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p> <p>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6.]</p>
<p>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p>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4.></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4., 2017. 7. 26.></p> <p>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6. 1. 28.]</p>	<p>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4. 28.>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10. 26.] [제목개정 2016. 4. 28.]</p>
	<p>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8.>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양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p>
<p>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p>	<p>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p>	
<p>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p>	<p>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1. 7.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1. 10. 26.]</p>
<p>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p>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10. 26.]</p>
<p>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p>	<p>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p>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1. 10. 26.]</p> <p>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p>[전문개정 2011. 10.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p> <p>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small>[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small>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small>
<p>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p> <p>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p>
<p>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p>	<p>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p>	<p>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1조에서 이동 <2017. 5. 8.>]</p>
<p>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6. 1. 28., 2017. 1. 4.></p> <p>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 1. 4.></p> <p>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0., 2017. 1. 4., 2021. 12.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p>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 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p>[본조신설 2017. 5. 8.]</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p>대한 성과보고서</p> <p>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p> <p>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p> <p>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7. 1. 4.]</p>	
<p>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p> <p>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p> <p>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p> <p>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p> <p>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p> <p>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p> <p>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p> <p>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p> <p>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p> <p>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p> <p>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p> <p>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p>	<p>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3. 13.></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p> <p>[본조신설 2017. 5. 8.]</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 정보</p> <p>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p> <p>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p> <p>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7. 1. 4.]</p>	
<p>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p>	<p>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p> <p>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p> <p>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p> <p>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4.]</p>	<p>조에서 같다)</p> <p>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p>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5. 8.]</p>
<p>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p> <p>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7. 1. 4.]</p>	<p>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 4.]</p>	<p>[본조신설 2017. 5. 8.]</p>
<p>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p>	<p>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 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4.]</p>	<p>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p>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5. 8.]</p>
<p>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p>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1. 4.]</p>	
<p>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보호정책 	<p>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②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⑦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⑧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5. 8.] [종전 제11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7. 5. 8.>]</p>
<p>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p>	<p>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5. 8.></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p> <p>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p>	<p>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본조신설 2016. 4. 28.]</p>
<p>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p>	<p>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p> <p>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8., 2020. 3. 31.></p> <p>[전문개정 2011. 7. 25.] [제목개정 2016. 1. 28.]</p>	<p>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전문개정 2011. 10. 26.]</p> <p>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p> <p>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p> <p>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p>
<p>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p>	<p>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4. 28.]</p>
<p>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p>	
<p>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p>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p>	<p>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1조에서 이동 <2017. 5. 8.>]</p>
<p>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small>[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small>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small>
<p>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mall>[전문개정 2011. 7. 25.]</small></p>	<p>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p> <p>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mall>[전문개정 2011. 10. 26.]</small></p> <p>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p>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p> <p>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1. 신규사업</p> <p>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1. 10. 26.]</p> <p>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 4. 28., 2020. 1. 29.></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p> <table border="1" data-bbox="858 1697 1412 1915">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td> <td>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td> </tr> <tr> <td>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td> <td>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10. 26.]</p>
<p>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p>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p>	<p>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 12. 14.></p> <p>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1. 12. 14.></p> <p>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1. 12. 14.></p> <p>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계약업체등”이라 한다)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1. 12.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자·계약업체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계약업체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I

II

III

IV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1. 4., 2021. 6. 15.>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계약업체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⑥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계약업체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계약업체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14.> [본조신설 2016. 4. 28.] [제목개정 2021. 12.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small>[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small>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small>
<p>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16. 1. 28.]</p>	
<p>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7. 25.]</p>	
<p>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6. 4. 28.]</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p>	
<p>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들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할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p>	<p>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 5. 8., 2021. 12. 14.></p> <p>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할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p>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8.]</p>	<p>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p>
<p>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p>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 1. 28.]</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 <개정 2011.7.25></p> <p>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p> <p>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p>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p>	<p>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 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p>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p> <p>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7. 25.]	설 2016. 4. 28.)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전문개정 2011. 10. 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p> <p>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p>[본조신설 2016. 1. 28.]</p>	
<p>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p>	<p>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p> <p>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p> <p>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p>	<p>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p> <p>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p> <p>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p> <p>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p> <p>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4. 28.]</p>
<p>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p> <p>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
<p>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8.></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7. 25.]</p>	<p>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 4. 28., 2020. 1. 29.></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td> <td>반편을 명명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td> </tr> <tr> <td>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td> <td>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td> </tr> </tbody> </table> <p>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10. 26.]</p>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편을 명명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편을 명명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p>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4.]</p>							
<p>제39조의4(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7. 1. 4.]</p>							
<p>제7장 벌칙 <개정 2011.7.25></p>							
<p>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p>							

I

II

III

IV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32247호, 2021. 12. 28., 일부개정]</p>
<p>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p> <p>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p> <p>[전문개정 2017. 1. 4.]</p>	
<p>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p>[전문개정 2011. 7. 25.]</p>	
<p>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p>[전문개정 2016. 1. 28.]</p>	
<p>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9. 1. 30.]</p>	

【붙임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10호, 2021.12.1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0.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3.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2. 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3.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보조금법 제15조의2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금법」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경험·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 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적격성 심사의 심사대상,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최종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⑤ 각 부처는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① 항의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

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복수급 검토에서 제외된 내역사업 및 동 내역사업

의 모든 하위 상세내역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수급 확인·점검 시 제외되도록 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

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

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다.
-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31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 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의2(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의 정당성
2. 이용자료범위의 적정성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4.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 5. 이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제34조(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보조금법」 제26조의9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한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보조금 또는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5조제3항 각 호의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경험·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으로 한다.

제3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직위의 임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4의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 35호에 따라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는 안전 상정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8조(실무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협회회의 안건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회회의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회의에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회회의 의장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2.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협의회회의 의장은「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명된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구성원은「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 제3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8조제2항에 따른 안건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실무협의회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9조(수당 등의 지급) 협회회의 또는 실무협의회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회의에 참석 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

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과오납의 환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5조(부정수급 점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

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 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

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 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 기 타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210호, 2021. 12. 13.>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붙임9】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 추진배경

- 2014.12.4.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 보조금 개혁 방안을 추진
-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구축하고, 2017.1월 부터 일부 개통(2017.7월 전체 개통)하여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 e나라도움 구성도 및 e나라도움 업무 흐름도 참조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가. 중복·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나. 업무 효율화

-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 현황 및 성과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I

II

III

IV

3 e나라도움 사용 대상

가. 지자체보조사업

- 지자체보조사업 중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은 e-호조를 통한 지출 내역이 e나라도움에 자동적으로 연계
- 지자체보조사업 중 민간에 이전하는 보조사업은 각각의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서 보조금 비목*이 아닌 유사 비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관리
 -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 ** 출연금, 민간위탁금,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대상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 사용대상 보조사업 : 개별 사업마다 시스템 사용 대상을 민간보조사업자 유형별로 모두 열거하여 추가하면 됨

나. 민간보조사업

- 중앙관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모든 민간보조 사업자(상위보조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아 집행하는 하위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
 - 사용 대상 보조사업 : 개별 사업마다 시스템 사용 대상을 민간보조사업자 유형별로 모두 열거하여 추가하면 됨

4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 새로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현재의 선 일괄지급 후정산체계에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예탁기관(한국재정 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
-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 (현재 모습)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 일괄 이체한 후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출행위로 집행, 사후 정산
 - (미래 모습)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예탁기관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각각의 지출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한 후 지출행위를 승인하여 거래처 등으로 이체 완료 및 온라인 정산 등

5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가. (1단계) 사전 검증

- 수급자 자격 검증, 중복 수급자 체크, 부정수급 이력 및 국세청 체납 등을 사전 검증 작업 진행

나. (2단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 모든 보조사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다. (3단계) 집행·사후 검증

-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적발
- 이종 취업자의 중복 정산이나 허위 근로자 여부 검증
- 집행 증빙의 진위 여부, 중복 사용 등을 자동 검증, 미사용 보조금 및 이자 발생분 확인 등을 집행 후에 검증

6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 모든 민간보조사업자는 참고2의 안내문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조치
 -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모든 업무처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활용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방안 등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과 협의하여 자체 교육 실시도 가능
 - *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전문강사가 전담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용자 교육계획을 별도 통보할 경우 적극 참여

I

II

III

IV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추진 전·후 비교

항 목	현 행	개선
■ 보조금 관리 컨트롤 타워	〈신설〉	•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기획재정부
■ 보조금 정보관리	〈신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신고 인프라	• 신고센터 분산 - 복지분야: 국민권익위 - 비복지분야: 각 부처 • 포상금 한도: 1억원	• 국민권익위로 단일화 • 포상금 한도 증액: 2억원 • 기관 포상제 도입
■ 보조사업 운영 관리	〈신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정 •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 보조사업자 선정 제도	• 부처별, 사업별로 기준 상이 • 선정 과정에 제3자의 부당 행위 개입	• 선정기준, 절차의 명확화 *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 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신설〉	•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에 보조사업자의 이력, 사업자 정보 등 공개 의무화
■ 민간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신설〉	• 보조금 10억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외부감사 의무화
■ 민간보조사업자 별칙·책임	〈신설〉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제 • 징벌적 과징금제(수급액의 5배) • 보조사업 참여 영구 금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신설〉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클린카드 개선 * 유사 유흥업소 등 제한대상 확대
■ 정산 절차	〈신설〉	• 정산 표준화 * 표준 정산지침 마련 •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외부 위탁 정산 의무화 • 미정산 보조사업자 패널티 부과
■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 등 사후관리	〈신설〉	• 중요재산 부기등기제 도입 • 중요재산 처분 승인없이 양도, 담보제공 등에 대한 처벌

2. e나라도움 교육자료

1. 구축 목적

국고보조금 전 처리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보조금 법 제26조의 2)



**부정
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수급 자격과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방지



**업무
효율화**

전자증빙을 통한 실시간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입니다.



정보공개

개인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제공, 보조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 공개
 등으로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

2. 추진 경과



3. e나라도움 교육자료

3. 주요기능

1 보조사업을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중앙관서·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사업신청→신청자 자격 검증→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

<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화 >



- ✓ 사업 신청자는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수급 자격 및 중복 신청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 적발

3. 주요기능

2 세부내역사업 단위로 최종 집행까지 관리합니다.

"내역사업"이라는 공통 집행단위 단위 설정, 중앙→지자체→민간보조사업자→최종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집행상황 관리

< 내역사업 체계(예시) >



4. e나라도움 교육자료

3. 주요기능

3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속성 정보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기본속성	내역사업 기본 정보 제공	사업목적, 지원 대상, 근거법령, 보조 형태 등
공통 속성 (9개)	내역사업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업들을 중복사업으로 분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유형 : 보건, 안전, 교육, 문화, 고용 등 지역별 : 국내(17개 시도 구분), 국외(대륙 구분) 생애 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년 등 소득수준별 : 기초생보, 차상위, 차차상위 등 경제 활동별 : 농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창업 등 교육 단위별 :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기업 규모별 :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가구 구성별 : 다문화, 새터민, 한 부모, 조손가정 등 성별 : 남성, 여성
개별 속성	내역사업별 특수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관리에 대한 주무부처 특수성 고려

3. 주요기능

4 보조금은 통합 예약기관에 예치되고 실시간 집행됩니다.

보조금을 통합예약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고 증빙 검증 및 실시간 건 별 집행(정산 기간 대륙 단독·간소화)

< 실시간 집행 >



5. e나라도움 교육자료

3. 주요 기능

5 맞춤형 검색과 보조사업 통합 공모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화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생애 주기·대상·지역·주제별 보조사업정보를 활용, 개개인의 국민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신청·확인 기능 제공

-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공모 현황이 e나라도움에 제공되어 사업 분야별, 공모 기관별, 지역별 조회 및 신청 가능
- ☑ 공모사업 등록 및 신청, 선정, 신청자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등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사업자
공모
통합 및
전자화

3. 주요 기능

6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정수급 된 보조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정산처리 이후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 부정수급 반환금 등 사후관리 프로세스 〉

〈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관리 〉



- 부정수급 보조금 : 보조금 반환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dBrain과 연계하여 고지 및 납부 실적 관리
- 중요재산 : 처분·담보 설정·타 용도 이용이 제한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및 목적 외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6. e나라도움 교육자료

3. 주요기능

7 보조사업 단계별로 촘촘하게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1 신청 단계에서 검증합니다.

- 보조사업별로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중복사업을 검증하고, 무자격자의 보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 자격을 검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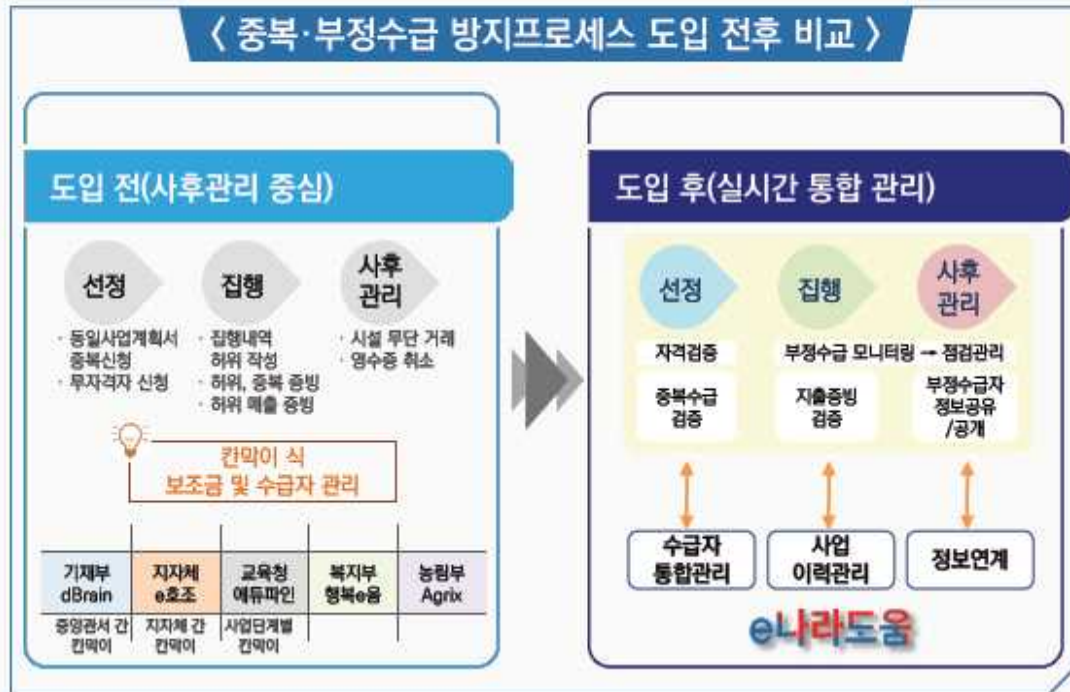
2 집행 단계에서 검증합니다.

- 국세청·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거래증빙 검증(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을 통해 부정 의심 거래를 관리함

3 사후 단계에서 한 번 더 검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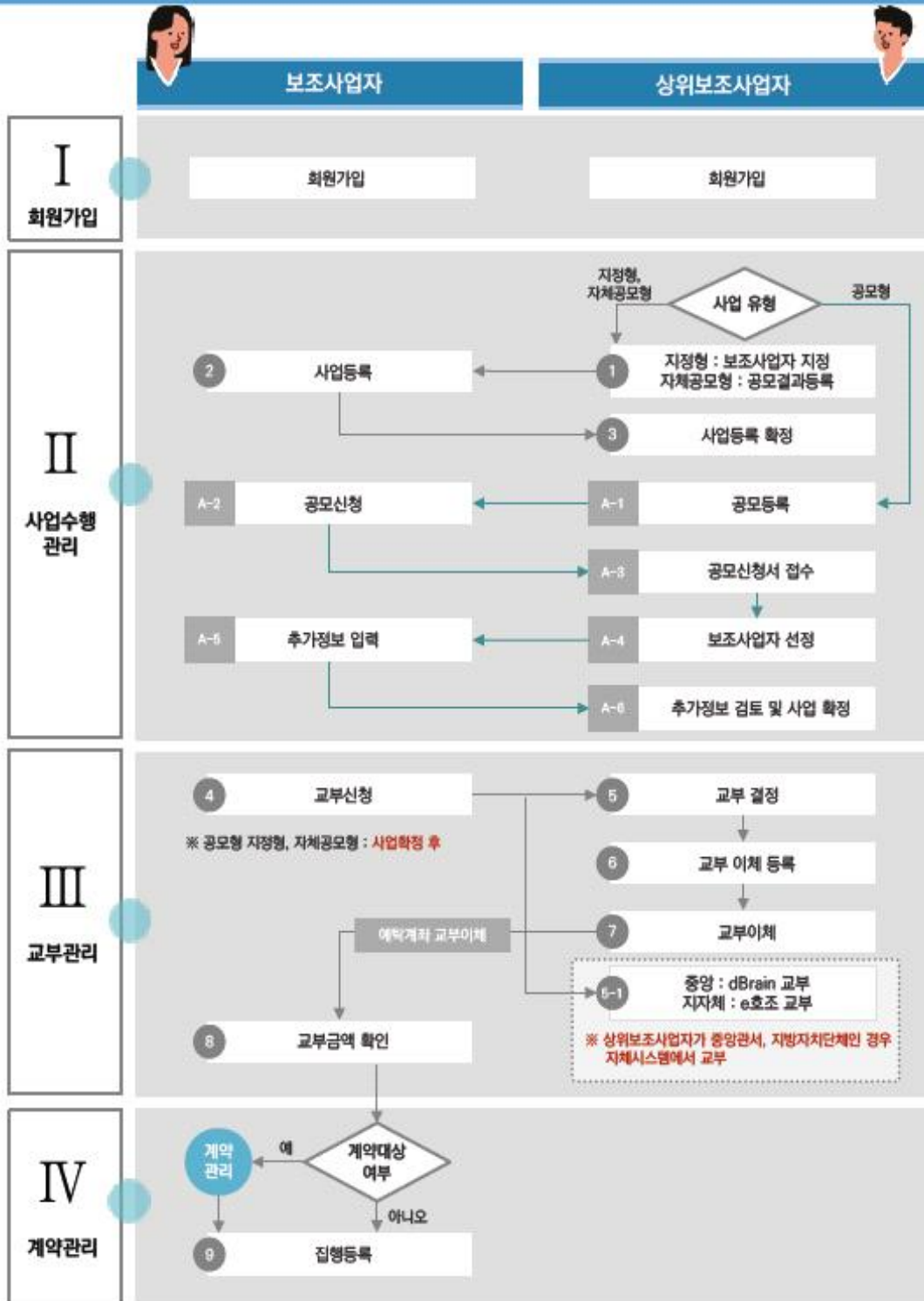
- 대법원, 국세청 등과 연계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여부 등 부정징후 모니터링으로 검증함

< 중복·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 전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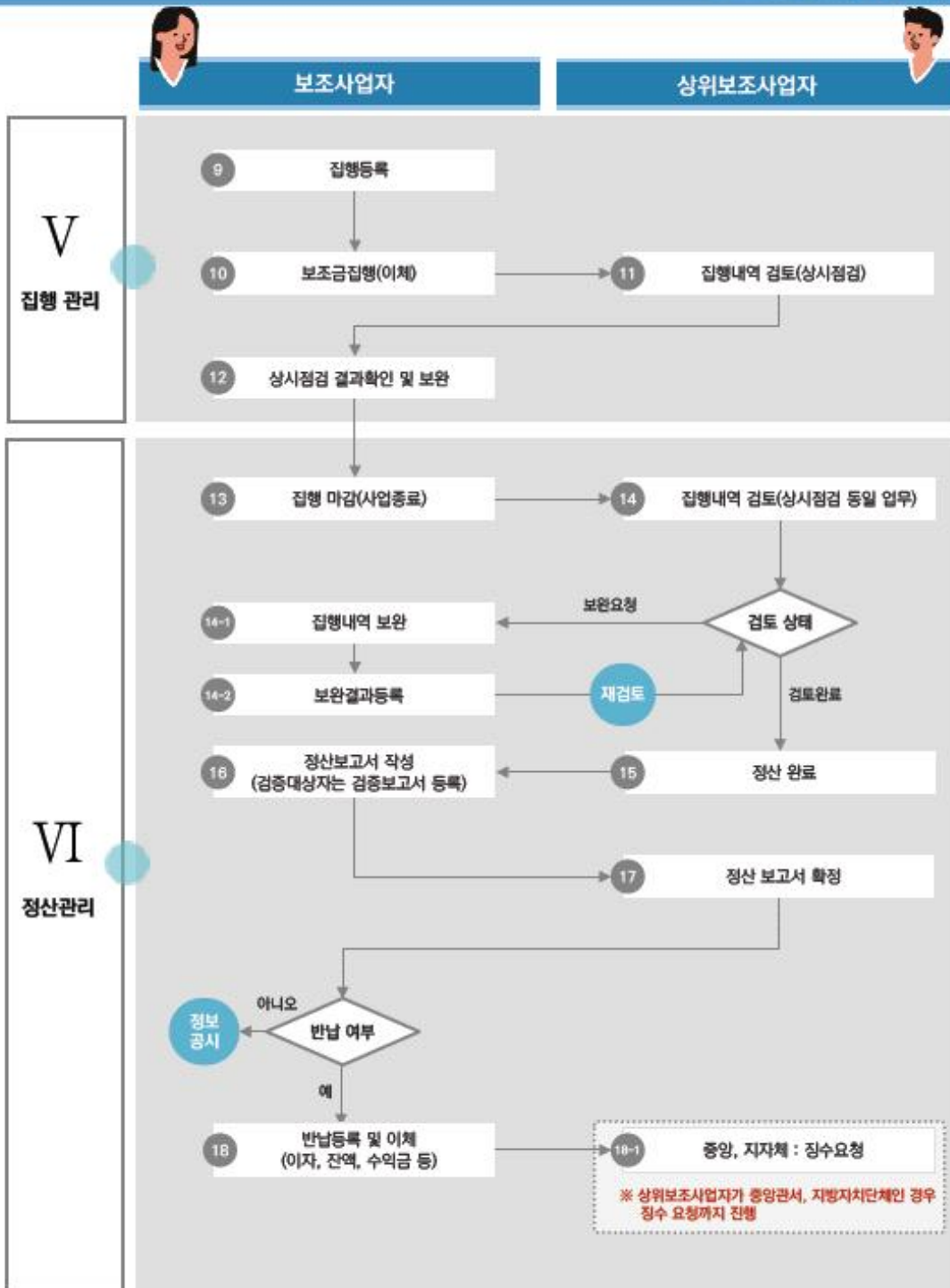
7. e나라도움 교육자료

e나라도움 전체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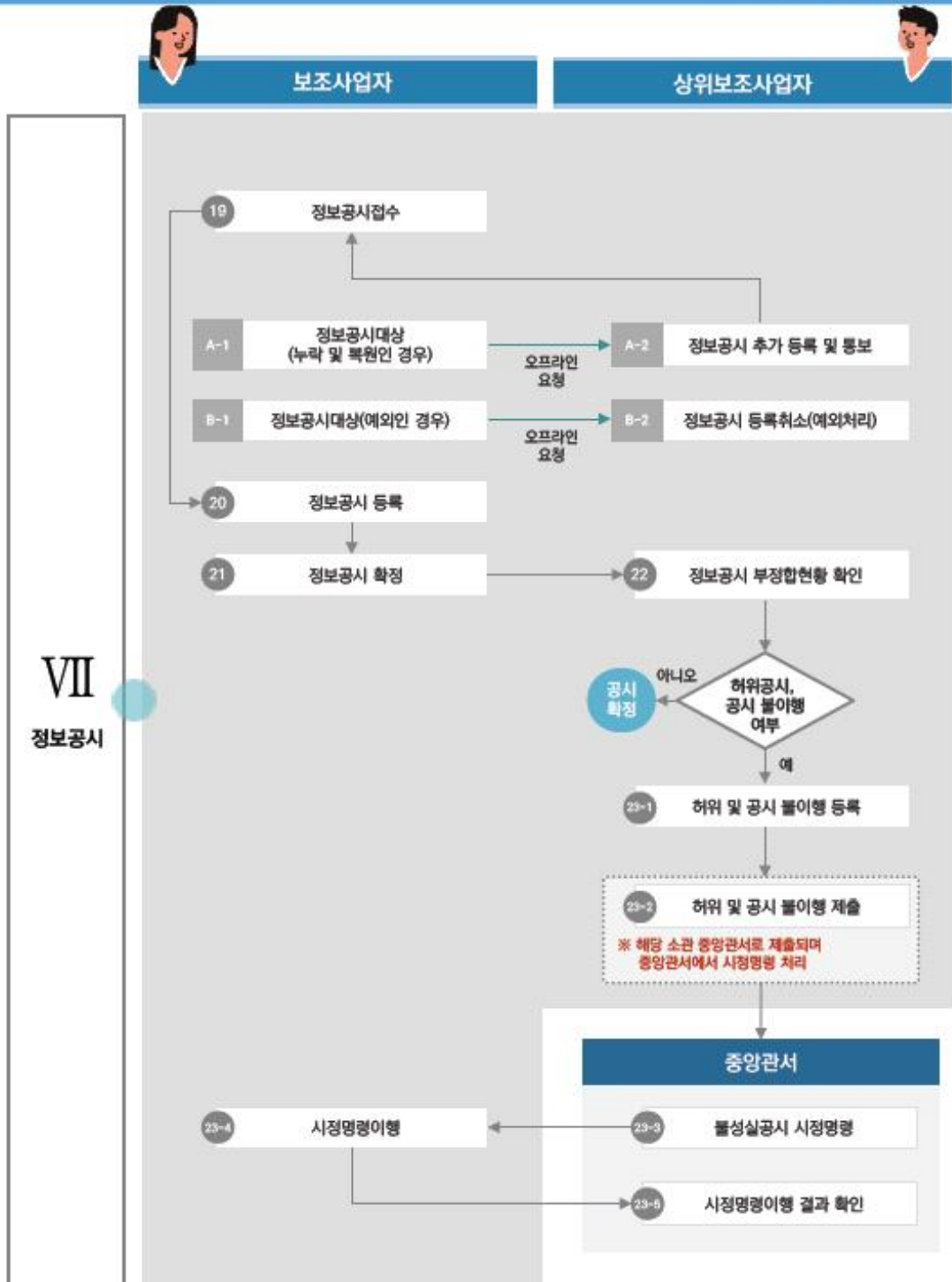
8. e나라도움 교육자료

e나라도움 전체 업무흐름도



9. e나라도움 교육자료

e나라도움 전체 업무흐름도



VII
정보공시

【붙임10】 중앙 개발 콘텐츠 활용 계획

1

만성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실행계획

가. 추진 목표

- 체계적·종합적인 건강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 근거기반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일반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과학적 근거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효과 극대화
 - 효과적인 만성질환 사업수행을 위해 근거가 입증된 사업모형 지원
-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합의한 진료지침 개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정부개입이 필요한 만성질환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환자-의사 관계 강화 및 초기 단계의 만성질환 적정관리 지원

나. 사업 목적

- 민·관·학 전문가 합의를 통한 근거기반 정보 개발 및 현행화
-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정보 보급

다. 추진 내용

- 건강정보 개발 및 제공
 - 매월 핵심적인 건강정보 및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 제공
 - 신규 건강정보 생산 및 콘텐츠 관리 순환 체계에 따른 질 관리
 - 국가건강정보포털 대국민 이용 활성화 및 운영
-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권고 개발 및 보급
 - 심뇌혈관질환 선형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 만성질환 중 일차의료기관에서 적정진료와 지속치료가 필요한 신규 질환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 대한의학회와 수의계약으로 「일차의료용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I

II

III

IV

라. 개발 콘텐츠

-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 내 만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건강정보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
- 지역사회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권고(2017-2019 질병예방서비스권고)
-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용 임상진료지침 및 환자 관리 자료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알림·자료>교육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사업(레드서클 합동캠페인)

가. 추진 목적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첫째 주)’을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행사를 포함, 온라인-오프라인 활용 언론홍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메시지 전달, 국민의식개선 및 행동변화 유도

나. 추진 방향

- 대국민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 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 활용 언론홍보’의 전략적 연계로 캠페인 메시지의 자발적 확산 유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되, 트렌드를 반영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다. 추진 내용

- 중앙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및 합동캠페인, 대중매체(TV, 라디오, 기획보도 등),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를 활용한 합동 캠페인 홍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로고, 슬로건, 캐릭터, 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추진
- 지역에서는 중앙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단위 캠페인 수행

라. 중앙 개발 홍보 콘텐츠

• 홍보 KIT

- 내용: 캠페인 증점메시지를 활용한 슬로건, 로고, 캐릭터 등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홍보KIT 제공
 - * 홍보KIT 구성: 로고, 슬로건, 캐릭터, 티셔츠, 모자, 현수막, X-배너, 백월, POP, 웹배너 등 디자인 소스, 포스터, 리플릿 등의 인쇄물 파일 제공
- 활용방법: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부스, 현수막, 홍보물품 등 제작 시 기관로고 삽입하여 활용

• TV 공익광고

- 내용: 중앙에서 제작되는 공익광고 영상에 지자체 기관명 삽입하여 사용
- 활용방법: 기관명이 삽입된 공익광고 영상을 활용하여 지역 매체(지역방송, 지역 케이블 TV, 전광판, 기관모니터, 교통매체 등)에 다양하게 활용

〈중앙 TV광고물 지역매체 매칭사업 추진 경과〉

- 2009년 ‘중앙의 콘텐츠와 지역의 홍보매체 매칭’ 시범 사업 시작
- 2010년 73개 기관으로 사업 확대 지원
- 2011년 광고 신청 및 송출 실적 제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 구축 및 활용
- 2012년~2013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지속 지원
- 2014년 신규제작 광고(2편), 2015년 신규제작 광고(1편), 전국 17개 시도 및 254개 보건소 지역명 삽입 후 일괄 지원
- 2016년 기존 공익광고(1편) 로고 업데이트, 전국 17개 시도 및 254개 보건소 지역명 삽입 후 일괄 지원

• 공익광고 동영상(mp4)

- 내용: 심뇌혈관질환 및 선행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 제작 및 지원

• 라디오광고 음원(wav)

- 내용: ‘전문의’ 등이 출연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방법에 대해 국민에게 이야기하듯이 전달하는 형태의 광고

• 캠페인 송 음원 및 동영상

- 내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수칙을 주제로 한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의 캠페인 송(음원) 및 캠페인 송을 활용한 2편의 동영상(어린이버전, 직장인버전) 등 지원

- 인포그래픽(PDF)

- 내용: 혈압관리의 중요성(고혈압편) 및 혈당관리의 중요성(당뇨병편)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

- 인쇄물 파일(리플릿, 포스터, 소책자)

- 내용: 혈압, 혈압 수치 알기의 중요성을 담은 리플릿, 포스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담은 소책자 지원
- 활용방법: 캠페인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

- 연극 및 마당극(대본)

- 내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생활수칙 메시지를 담은 연극 및 마당극 대본 지원

- 연극(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직장과 가정생활에 지친 중년의 가장이 동료의 죽음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 마당극(신비의 명약을 찾아서): 바다 속 왕국의 백성들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나둘 쓰러지자 별주부는 명약을 구하라는 명을 받고 육지로 올라와 명약을 찾는 모험 끝에, 명약은 다름 아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생활수칙임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으로 별주부전을 패러디

- 비대면 홍보 KIT

- 내용: 캠페인 중점메시지를 활용한 슬로건, 캐릭터 등 개발하여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홍보KIT 제공
- * 홍보KIT 구성: 슬로건, 배너, 현수막, X-배너, 썸네일 등 디자인 소스 제공
- 활용방법: 무인홍보부스, 현수막, 홍보물품 등 제작 시 기관로고 삽입하여 활용 가능

- 동영상 홍보교육자료(mp4)

- 내용: 생활터(어린이 등) 중심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동영상 제작 관계부처를 통한 홍보 지원

- 웹툰

- 내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웹툰 제작 및 지원
- 활용방법: 온라인 캠페인 홍보자료, 질병관리청 카카오 스토리(<http://story.kakao.com/ch/koreacdc/>)에서 공유 가능

마. 기타 사항

- 매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첫째 주)에 맞춰 합동캠페인 지속 추진 예정
 - 중앙에서는 캠페인 중점 메시지(슬로건)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자체 전달 → 지역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기점으로 중앙 개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 캠페인 수행
- 신규 개발 홍보콘텐츠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를 통해 업로드 될 예정

I

II

III

IV

Part IV

부 록

【부록1】 관련 지표

【부록2】 질환 정의

【부록3】 관련 통계

【부록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경과

【부록1】 관련 지표

➔ WHO Voluntary Global NCD Target 2025

1.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25% 감소
2. 고위험 알콜 섭취율 최소 10% 감소
3. 불충분한 신체활동에 따른 유병률 10% 감소
4. 소금/나트륨 섭취율 30% 감소
5. 15세 이상의 현재 흡연율 30% 감소
6. 자국의 환경에 따라 고혈압 유병률 25%
7. 당뇨병과 비만의 증가 억제
8.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치료 및 상담(혈당 조절 포함)을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최소 50%
9.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주요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기본 기술과 필수적인 의약품(제네릭을 포함)에 80%가 접근 가능

➔ HP2030 대표지표

대표지표			형평성 지표		
지표명	'18	'30	지표명	'18	'30
성인남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33.2%	32.2%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5.4%p	4.4%p
성인여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23.1%	22.1%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8.5%p	7.5%p
성인남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12.9%	11.9%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4.4%p	3.4%p
성인여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7.9%	6.9%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5.4%p	4.4%p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50.4%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 p	17.5% p

* 자료원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1. 관계부처합동

【부록2】 질환 정의

가. 고혈압¹⁾²⁾

표 1. 혈압의 분류

혈압 분류	수축기 혈압 (mmHg)		확장기 혈압 (mmHg)
정상혈압	<120	그리고	<80
주의혈압	120~129	그리고	<80
고혈압 전단계	130~139	또는	80~89
고혈압	1기	또는	90~99
	2기	또는	≥100
수축기 단독고혈압	≥140	그리고	<90

표 2. 위험도에 따른 고혈압 약물치료

혈압(mmHg) 위험도	2기 고혈압전단계 (130~139/85~89)	1기 고혈압 (140~159/90~99)	2기 고혈압 (≥160/100)
위험인자 0개	생활요법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당뇨병 이외의 위험인자 1~2개	생활요법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위험인자 3개 이상, 무증상 장기손상	생활요법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 생활요법의 기간은 수주에서 3개월 이내로 실시한다.

** 혈압의 높이를 고려하여 즉시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 설정된 목표혈압에 따라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1) 2018년 고혈압 진료지침. 대한고혈압학회(2018)

2) 일차 의료용 근거기반 고혈압 임상진료지침. 대한의학회(2019 개정)

표 3. 생활요법에 따른 혈압감소 효과

생활 요법	혈압 감소 수축기/확장기 혈압(mmHg)	권고 사항
소금섭취 제한	-5.1/-2.7	하루 소금 6g 이하
체중감량	-1.1/-0.9	매 체중 1kg 감소
절주	-3.9/-2.4	하루 1잔 이하 (10g/day 알코올)
운동	-4.9/-3.7	하루 30~5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식사조절	-11.4/-5.5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

* 건강한 식습관이란 칼로리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야채, 과일, 생선류, 견과류, 유제품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이요법으로 정의한다.

나. 당뇨병³⁾

표 4. 당뇨병의 진단기준

당뇨병의 진단기준
① 공복혈당 $\geq 126\text{mg/dL}$ (이 기준은 명백한 고혈당이 아니라면 다른 날에 검사를 반복하여 확인)
②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과 임의 혈당 $\geq 200\text{mg/dL}$
③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당 $\geq 200\text{mg/dL}$
④ 당화혈색소 $\geq 6.5\%$
당뇨병 전단계의 진단기준
① 정상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공복혈당 100mg/dL 미만, ▶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당 140mg/dL 미만
② 공복혈당장애 진단기준은 공복혈당 $100\text{-}125\text{mg/dL}$
③ 내당능장애 진단기준은 75g 경구당부하 2시간 후 혈당 $140\text{-}199\text{mg/dL}$

3) 일차 의료용 근거기반 당뇨병 임상진료지침. 대한의학회(2019 개정)

다. 이상지질혈증⁴⁾

표 5.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

총콜레스테롤	(mg/dL)
높음	≥ 240
경계	200~239
정상	< 200
LDL 콜레스테롤	(mg/dL)
매우 높음	≥ 190
높음	160~189
경계	130~159
정상	100~129
적정	< 100
HDL 콜레스테롤	(mg/dL)
낮음	< 40
높음	≥ 60
중성지방	(mg/dL)
매우 높음	≥ 500
높음	200~499
경계	150~199
정상	< 150

표 6. 위험군 분류에 따른 LDL 콜레스테롤 및 non-HDL 콜레스테롤의 목표치

위험도	LDL 콜레스테롤 목표(mg/dL)	Non-HDL 콜레스테롤 목표(mg/dL)
초고위험군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발작 말초혈관질환	<70	<100
고위험군 경동맥질환* 복부동맥류 당뇨병	<100	<130
중등도 위험군 주요위험인자 2개이상	<130	<160
저위험군 주요위험인자 1개이하	<160	<190

* 50%가 넘는 경동맥 협착이 확인된 경우

4)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제4판).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2018)

표 7. LDL-C 제외한 주요 위험인자*

위험인자	내용
흡연	- 흡연하는 경우
고혈압	- 수축기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확장기혈압 90 mmHg 이상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낮은 HDL-C	- HDL-C 40 mg/dL 미만인 경우
연령	- 남성의 경우 45세 이상 -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
조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 부모, 형제자매 중 남성의 경우 55세 미만, 여성의 경우 65세 미만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 당뇨병은 하나만 있어도 고위험군이어서 이표에서 위험인자 개수 산정 시 당뇨병은 제외한다.

* 높은 HDL-C(60 mg/dL 이상)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인자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총 위험인자 수-1)

【부록3】 관련 통계

→ 심뇌혈관질환 사망 현황

- 2020년 사망원인 2, 4, 6, 9위인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2.6%를 차지

(단위: 인구 10만명 당, 명, %)

사망원인순위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1	약성신생물(암)	82,204	27.0
2	심장 질환 ¹⁾	32,347	10.6
3	폐렴	22,257	7.3
4	뇌혈관 질환	21,860	7.2
5	고의적 자해(자살)	13,195	4.3
6	당뇨병	8,456	2.8
7	알츠하이머병	7,532	2.5
8	간 질환	6,979	2.3
9	고혈압성 질환	6,100	2.0
10	패혈증	6,086	2.0

- 1) 심장질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기타 심장질환이 포함
- 2) 자료원 : 2020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통계청

→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4.25조(허혈성심질환 및 뇌졸중 3.28조, 당뇨 0.97조)로, 암(5.53조)과 유사한 수준
- * 자료원 정영호·고숙자, 「5대 사망원인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2004. 제18집, p.90

→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변화 양상

- 고혈압 유병률 : 만 19세 이상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20.1	22.1	23.3	22.0	23.1	22.2	22.9
남	23.8	26.3	28.2	27.0	27.6	25.5	28.6
여	16.4	17.9	18.1	16.6	18.3	18.5	16.8

* 자료원 2020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 당뇨병 유병률(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 만 19세 이상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9.3	8.0	9.7	9.1	9.2	9.5	10.7
남	11.2	9.1	11.1	10.9	11.2	11.1	13.0
여	7.5	7.0	8.3	7.3	7.1	8.0	8.2

* 자료원 2020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만 19세 이상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1.6	14.8	16.7	18.1	17.7	18.1	19.7
남	11.0	14.1	16.5	17.5	17.9	17.0	20.2
여	11.9	15.1	16.5	18.3	17.1	18.9	18.8

* 자료원 2020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관리 실태 변화 양상

- 고혈압 관리실태 : 만 19세 이상

(단위 : %)

구 분		'13-'15(6기)	'16-'18(7기)	'19-'20
인지율 ¹⁾	전체	66.0	67.4	69.8
	남자	58.2	61.7	65.2
	여자	74.9	74.6	75.2
치료율 ²⁾	전체	62.1	63.5	65.2
	남자	53.5	57.2	59.5
	여자	72.2	71.4	72.0
조절률 ³⁾	전체	45.1	47.1	47.6
	남자	39.0	43.8	45.4
	여자	52.3	51.1	50.2
조절률 ⁴⁾	전체	72.0	73.2	72.2
	남자	72.4	75.9	75.3
	여자	71.7	70.5	69.2

* 자료원 2020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 1) 고혈압 인지율 :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을
- 2) 고혈압 치료율 :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화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을
- 3) 고혈압 조절률(유병자 기준) :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 이완기 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을
- 4) 고혈압 조절률(치료자 기준) : 고혈압 치료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미만,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을

- 당뇨병 관리실태(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 만 19세 이상

(단위 : %)

구 분		'13-'15(6기)	'16-'18(7기)	'19-'20
인지율 ¹⁾	전체	60.5	64.1	65.1
	남자	59.0	60.1	62.4
	여자	62.4	69.3	68.5
치료율 ²⁾	전체	54.1	59.3	60.6
	남자	51.8	55.5	56.6
	여자	57.0	64.0	65.7
조절률 ³⁾ (유병자 기준)	전체	23.1	28.3	24.1
	남자	24.8	29.2	24.2
	여자	21.0	27.2	24.1
조절률 ⁴⁾ (치료자 기준)	전체	22.3	25.8	25.1
	남자	23.2	25.1	23.7
	여자	21.2	26.5	26.6

* 자료원 2020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 1) 당뇨병 인지율 : 당뇨병 유병자(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을
- 2) 당뇨병 치료율 : 당뇨병 유병자(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중 현재 혈당강화제를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 투여 분을
- 3) 당뇨병 조절률(유병자 기준) : 당뇨병 유병자(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중 당화혈색소가 6.5%미만인 분을
- 4) 당뇨병 조절률(치료자 기준) : 당뇨병 치료자(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중 당화혈색소가 6.5%미만인 분을

• 고콜레스테롤혈증 관리실태 : 만 19세 이상

(단위 : %)

구 분		'13-'15(6기)	'16-'18(7기)	'19-'20
인지율 ¹⁾	전체	55.7	57.5	62.9
	남자	48.4	53.5	61.2
	여자	61.5	61.0	64.2
치료율 ²⁾	전체	44.0	48.1	55.1
	남자	37.4	45.7	54.3
	여자	49.2	50.1	55.8
조절률 ³⁾	전체	38.4	41.2	47.6
	남자	34.9	39.8	47.0
	여자	41.1	42.4	48.2
조절률 ⁴⁾	전체	84.4	84.0	85.0
	남자	88.4	85.6	85.1
	여자	81.9	82.7	85.0

* 자료원 2020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 1) 고콜레스테롤혈증 인지율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을 받은 분을
- 2)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율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현재 콜레스테롤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을
- 3)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유병자 기준)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총콜레스테롤수치가 200mg/dL 미만인 분을
- 4)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률(치료자 기준) :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자 중 총콜레스테롤수치가 200mg/dL 미만인 분을

→ 우리나라 주요 질병부담

- 질병부담(YLL, YLD, DALY)별 순위 10개 질환

순위	YLL (조기사망으로 인한 수명손실년수)		YLD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건강년수의 상실)		DALY (장애보정생존년수)	
	질환	년수(%)	질환	년수(%)	질환	년수(%)
1	암	1,316(30.13)	당뇨, 비노생식계, 혈액, 내분비 질환	3,470(15.47)	당뇨, 비노생식계, 혈액, 내분비 질환	3,706(13.83)
2	순환계통 질환	824(18.88)	기타 비감염성 질환	3,295(14.69)	기타 비감염성 질환	3,346(12.48)
3	자해 & 폭력	679(15.56)	근골격계 질환	3,217(14.34)	순환계통 질환	3,226(12.04)
4	교통사고를 제외한 의도되지 않은 손상	260(5.96)	순환계통 질환	2,402(10.71)	근골격계 질환	3,223(12.03)
5	교통사고	259(5.92)	만성 호흡기 질환	1,715(7.64)	암	2,261(8.44)
6	당뇨, 비노생식계, 혈액, 내분비 질환	236(5.41)	정신 & 행동 장애	1,643(7.32)	만성 호흡기 질환	1,838(6.86)
7	간경변증	204(4.67)	소화계 질환 (간경변증 제외)	1,558(6.94)	정신 & 행동 장애	1,670(6.23)
8	신경계통 장애	127(2.92)	교통사고를 제외한 의도되지 않은 손상	1,000(4.46)	소화계 질환 (간경변증 제외)	1,607(6.00)
9	만성 호흡기 질환	123(2.82)	암	946(4.21)	교통사고를 제외한 의도되지 않은 손상	1,260(4.70)
10	설사, 하기도감염, 뇌수막염, 그 외 공통 감염성 질환	62(1.43)	교통사고	867(3.87)	교통사고	1,126(4.20)

※ JH Y. et al.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for 313 Diseases and Injuries: the 2012 Korean Burden of Disease Study. 31:S146-157 JKMS, 2016

【부록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경과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사업

- '06.6.9: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수립
 -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위원회」구성·운영
 - * 공동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및 민간(의료계) 1인
- '06.9.19: 심뇌혈관질환 홍보위원회 구성
 - '06.9.19~'08.12.31. 홍보위원회 총 30회 개최
 -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개발, TV-CM 등 홍보방안 논의 등
- '07.9.1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TV 공익광고 방영 시작
 - * KBS, MBC, SBS 등 3개 지상파를 통해 11.12일까지 총 62회 방영
- '08.6.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 제정·공포
- '08.10.1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TV 공익광고 방영 시작
 - * KBS, MBC, SBS와 유선방송을 통해 11.14일까지 총 169회 방영
- '09.1.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라디오 공익광고 방송 시작
 - * 교통방송(TBN, TBS)을 통해 연간 총 1,460회 송출
- '09.10.1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TV 공익광고 방영 시작
 - * 공중파, 케이블, 지역민방 등을 통해 총 1,223회 방영
- '10.10.1~10.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TV 공익광고 방영 시작
 - * 공중파, 케이블, 지역민방 등을 통해 총 503회 방영
- '11.1.1~12.31: 중앙 TV광고물 지역매체 매칭사업
 - * 약 288억원의 송출실적 효과
 - * 전국 16개 시도 113개 기관 참여, 355편 광고 활용
- '11.1.1~12.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라디오 공익광고 연중 송출(총730회)
- '11.11.1~12.1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TV 공익광고 방영 송출
 - * 공중파, 케이블, 지역민방 등을 통해 총 339회 방영
- '12.1.1~12.31: 중앙 TV광고물 지역매체 매칭사업
 - * 전국 16개 시도 64개 기관 참여, 171편 광고 활용
- '12.1.1~12.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라디오 공익광고 연중 송출(총1,038회)
- '13.5.13~5.19: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 진행
 - * 광화문 기념행사(5.13): 8개 유관학회 등 16개 기관 참여, 지역단위 합동캠페인(5.13~5.18): 74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참여
- '13.7.1~12.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라디오 공익광고 연중 송출(총730회)
 - * 공중파(MBC, SBS, KBS) 송출
- '13.9.1~12.31: 지하철 스크린도어광고 집행(11개 역사)
 - * 지하철 : 건대입구, 교대, 신도림, 강변, 고속터미널, 불광, 안국(7개 역사)
 - KTXT : 부산역, 대구역, 광주역, 대전역(4개 역사)

- '13.1.1~12.31: 중앙 TV광고물 지역매체 매칭사업
 - * 전국 17개 시도 52개 기관 참여, 268편 광고 활용
- '14.5.1-12.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총 245회)
- '14.8.30~8.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기념행사(선포식 및 캠프)
 - * 가평 하이캠핑장 : 일반인 가족 선정 약 200명 규모 진행
- '14.9.1~9.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지역단위 합동 캠페인 진행
- '14.10.20~12.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옥외광고 송출
 - * 지하철, KTX, 마트광고, 영화관,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 집행
- '15.9.1~9.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기념행사(6대 도시 참여)
 - * 서울 및 5대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체험형 부스(레드서클존) 운영
- '15.9.1~9.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지역단위 합동 캠페인 진행
- '15.8.25-9.8: 라디오 캠페인(특집 프로그램) 진행
 - * MBC FM4U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 직장인 단합 퀴즈쇼
- '15.8-1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자기혈관 숫자 알기”) 공익광고 송출
 - * IPTV(올레TV, Btv, U+tv), 케이블TV(tvN, OCN, MBC 에브리원), 라디오(MBC, KBS2, SBS파워FM, TBS교통방송)
- '16.9.1~9.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지역단위 합동 캠페인 진행
 - * 서울특별시 및 5대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기타 시도(울산,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세종, 제주) 혈관수치 측정 및 건강상담 등 체험형 부스(레드서클존) 운영
- '16.8.24-12.2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자기혈관 숫자 알기”) 공익광고 송출
 - * IPTV(올레TV, Btv, 디지털테이블, Zapping AD), 케이블TV(tvN, OCN, KBS Drama, MBC Sports, SBS Plus), 라디오(MBC, KBS2, SBS파워FM, TBS교통방송)
- '17.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2017.5.30. 시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2017.5.30. 시행)
- '17.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국단위 합동캠페인 진행(14개 시도 및 254개 보건소 참여)
 - * 중점 추진내용: 지역별 건강부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3040타킷 점점별 매체운영-라디오 광고, SNS, 반상회보, 키오스크 송출 등
- '17.12.20: 겨울철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주의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배포
- '18.9.4: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발표
- '18.8.27~10.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합동캠페인 진행(시도 및 보건소 참여)
 - * 3040세대 직장인대상 현장캠페인(시·군청, 체육관, 야구장, 지하철역 등) 진행, 참여형 레드서클 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 운영 등
- '18.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 라디오 공익광고 및 동영상 2편 제작·송출, 온라인 콘텐츠(포스터, 리플릿, 인포그래픽 등) 제작·송출 및 지자체 지원
- '18.12.27: 겨울철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주의 보도자료 및 건강소식 배포
- '19.5: 대한고혈압학회와 협력하여 ‘5월 혈압측정의 달 캠페인(MMM)’ 실시
- '19.9~10: 중앙·지역 공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합동캠페인
- '19.9: 라디오 공익광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송출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19.12: 겨울철, 심근경색 및 뇌졸중 예방 홍보 실시
 - * KTX서울역사 옥외광고, 홍보콘텐츠(포스터,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제작·온라인 송출 및 지자체 지원
- '20.5: 대한고혈압학회와 협력하여 '세계 고혈압의 날 기념' 유튜브 공모전 실시
- '20.9: 질병관리청 개청에 따른 로고 등 홍보콘텐츠 현행화
- '20.9~1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합동캠페인
 -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9~12월 진행, 무인홍보부스 및 온라인 캠페인 중심 홍보 실시
- '20.12: 겨울철 심근경색 및 뇌졸중 예방 홍보콘텐츠 개발(3D동영상 등)·온라인(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 홍보
- '21.9~1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비대면 합동캠페인 진행, 퀴즈 이벤트 등 온라인 홍보 실시
 - *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비대면 캠페인으로 진행, 전국 보건소 운영 제외
- '21.12: 겨울철 심근경색 및 뇌졸중 예방 홍보(옥외광고 및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 실시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07.9.3: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작
- '09.3.1: 인천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 실시
- '09.7.1: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작
- '09.12.16: 대구시 등록관리 시범사업 2주년 성과 보고회 실시
- '10.10: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작
 - 남양주시(10.20~), 하남시(11.1~), 안산시(11.15~)
- '10.12.15: 대구시 등록관리 시범사업 3주년 성과 평가대회 실시
- '11.11.23: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주년 성과보고 및 발전대회 실시
- '11.11.23: 2012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평가대회 개최
 - * 상위 5개소 신규지역 선정(서울 성동구, 강원 동해시, 충남 연기군,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 '11.11.30: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주년 성과보고 및 발전대회 실시
- '11.12.6: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주년 발전대회 실시 및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교육홍보관 개관
- '11.12.9: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주년 성과 보고대회 실시
- '12.1.17: 2012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지역 선정 평가대회 개최
 - * 신규지역 10개소 추가 선정(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여수시·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12.2.27~2.29: 2012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신규지역 1차 교육
- '12.5.29~5.31: 2012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신규지역 2차 교육

- '12.6.21: 2012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신규지역 3차 교육
- '12.7.1~: 신규 참여 지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환자 등록 시작
- '12.7.13: 「2013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추진 방향 설명회
- '12.8.6~: 합병증 검사비 지원 시작
- '12.11.14: 2012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신규지역 4차 교육
- '13.1.29: 「2013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집행」방향 설명회
- '13.3.18: 2013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차 교육
- '13.4.18: 「중양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
- '13.5.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보건소 담당자 및 등록교육센터장 회의
- '13.5.23: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도 담당자 및 지원단장 회의
- '13.8.1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모니터링 지표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 '13.9.4: 「중양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제 2차 운영위원회 회의
- '13.10.1: 「제1차 만성질환(NCD)관리 포럼」
- '13.11.13: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워크숍
- '13.12.4: 2013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 및 제2차 NCD 포럼 개최
- '14.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자 패널」제 1차 운영회의
- '14.4: 「중양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제 7차 운영회의
- '14.6: 2014년 「고혈압·당뇨병 보건소 담당자 교육」
- '14.7: 「중양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제 8차 운영회의
- '14.8: 제3차 NCD(Non Communicable Disease) 포럼
- '14.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발전 방향 모색 워크숍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발전 방향 모색 워크숍
- '14.11: 2014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 개최
- '15.8: 중양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제 9차 운영위원회
- '15.8: 제5차 NCD(Non Communicable Disease) 포럼 개최
- '15.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센터장 및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지원단장 워크숍
- '15.9~1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 '15.11: 제6차 NCD(Non Communicable Disease) 포럼 개최
- '15.1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 '16.3: 중양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제 10차 운영위원회
- '16.5: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장회의
- '16.6: 제7차 NCD(Non Communicable Disease) 포럼 개최
- '16.7: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워크숍

- '16.7~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 '16.8: 중앙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제 11차 운영위원회
- '16.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보건소장 간담회
- '16.9: 제8차 NCD(Non Communicable Disease) 포럼 개최
- '16.11: 중앙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제 12차 운영위원회
- '16.12: 중앙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제 13차 운영위원회
- '16.1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평가 공유대회 개최
- '16.12: 중앙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제 14차 운영위원회
- '17.4: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워크숍
- '17.5~10월: 2017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심화교육
- '17.7: 「제9차 만성질환(NCD)관리 포럼」(주제: 지역사회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17.7: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워크숍
- '17.7~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 '17.10: 「제10차 만성질환(NCD)관리 포럼」(주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공청회)
- '17.1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
- '17.12: 2017 만성질환 Factbook「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제작 및 배포
- '18.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워크숍
- '18.5~10: 2018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심화교육
- '18.6: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워크숍
- '18.7: 「제11차 만성질환(NCD)관리 포럼」(주제: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과학적 접근)
- '18.7~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 '18.10: 「제12차 만성질환(NCD)관리 포럼」(주제: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 '18.11: 2018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
- '18.12: 2018「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제작 및 배포
- '19.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워크숍
- '19.5~10: 2019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심화교육
- '19.7~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 '19.10: 「제13차 만성질환(NCD)관리 포럼」(주제: 근거기반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혁신방안)
- '19.11: 2019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
- '19.12: 「2019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제작 및 배포
- '20.7~1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심화교육
- '20.10: 「제14차 만성질환(NCD)관리 포럼」(주제: 코로나19 시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전략)
- '20.11: 2020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온라인)

- '21.6~11: 2021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문인력 심화교육
- '21.10: 「제135 만성질환(NCD)관리 포럼」(주제: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기반 심뇌혈관 질환 관리체계 발전방안)
- '21.11: 2021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온라인)
- '21.11: 「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제작 및 배포

→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지정·운영

- '08.11.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3개소 지정
 - * 3개 권역(강원, 대구·경북, 제주)
- '09.3.3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3개소 추가 지정
 - * 3개 권역(충북, 광주·전남, 경남)
- '10.4.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3개소 추가 지정
 - * 3개 권역(대전·충남, 전북 부산·울산)
- '12.11.23: 2012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개소 추가 지정(분당서울대, 인하대)
 - * 2개 권역(경기, 인천)
- '13.10~1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개소) 2013년 사업종합평가 실시
- '13.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후속사업 운영비 지속지원 확정
- '14.4: 2008년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후속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 및 2기 사업 착수
 - * 2008년 지정센터 3개소(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 '15.2: 2009년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후속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 및 2기 사업 착수
 - * 2009년 지정센터 3개소(경상대, 전남대, 충북대)
- '16.2: 2010년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후속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 및 2기 사업 착수
 - * 2010년 지정센터 3개소(동아대, 원광대, 충남대)
- '17.12: '심뇌혈관질환센터' 2개소 추가 지정
 - * 2개소: 안동병원, 목포중앙병원
- '18.4: 2012년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후속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 및 2기 사업 착수
 - * 2012년 지정센터 2개소(분당서울대, 인하대)
- '20.1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 심뇌혈관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

- '07.9: 병원기반 심근경색, 뇌졸중 조사감시체계 구축계획 수립
- '07.7~12: 170개 표본병원 퇴원환자 심근경색, 뇌졸중 심층조사 시범운영
- '08.2.28: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08년 사업계획 수립
 - * 민간협력모형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정착 추진

- '08.5~11: 퇴원환자 심뇌혈관질환 심층조사 완료
- '08.6.17: 질병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간 MOU 체결
 - * 심정지조사 및 국가구급지표 개발에 안정적 기반 마련
- '09.1.23: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09년 사업계획 수립
 - * 민간협력모형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내실화
- '09.5~11: 퇴원환자 심뇌혈관질환 심층조사 완료
- '09.9.24: 2006~2008년 심정지 의무기록 조사결과 발표
- '10.4.30: 2009년 응급실 기반 심근경색·뇌졸중 등록감시사업 결과 발표
- '10.5~11: 퇴원환자 심뇌혈관질환 심층조사 완료
- '10.6: 2009년 심정지 의무기록 조사 결과 발표
- '11.3.11: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11년 사업계획 수립
- '11.3~: 국가 심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및 2회 자문회의 개최('11.5.24, '11.7.19)
- '11.5~11: 퇴원환자 심뇌혈관질환 심층조사 완료
- '11.9.29: 급성심장정지조사 국가 통계 승인(승인번호 11788)
- '11.11~12.3: 심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12.4: 제3차 심정지 역학과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 '12.4~12: 퇴원환자 심뇌혈관질환 심층조사 완료
- '12.4~12: 국가 심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회 3회 개최(4.12, 6.14, 11.1)
- '12.6: 제4차 심정지 역학과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 '12.7.24: 제1차 심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2006~2010년 결과보고) 및 심정지 발생시 초기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 '12.9.1~'13.3.31: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기초단계 1, 2) 개발
- '12.11: 제5차 심정지 역학과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 '12.12: 급성심장정지조사 지침 및 사례집 발간
- '13.2.20: 심혈관질환 관련 연구자 토론회 개최
- '13.3~12: 국가 심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회 2회 개최(3.5, 12.5)
- '13.4~11: 퇴원환자 심뇌혈관질환 심층조사 완료
- '13.5.21: 2011~2012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완료
 - * '11년 조사 완료(588개 병원, 22,196건), '12년 조사 완료(610개 병원, 27,444건)
 - ※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향적 시범조사 실시(63개 병원, 1,209건)
 - 서울시 심정지 생존율 '10년(6.3%)→'11년(8.9%) 향상되어 전향적 조사 전국 확대
- '13.5.30: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기초교육 프로그램 교육동영상 및 교육강사용 지침서 보급
- '13.6.19: 제2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
- '13.7.18: '13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실행계획 보고

- '13.8.~'14.10: 2013년 급성심장정지 의무기록조사수행 완료(575개 병원, 28,170건)
- '13.9.17: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심화교육 프로그램 교육동영상 및 교육강사용 지침서 개발
- '13.10~'14.2: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기초교육 프로그램 교육동영상 9개 국어 번역 및 전문가 감수 완료
 - ※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총 9개 국어 번역
- '14.4.19: 제3차 급성심장정지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4.6~'15.8: 2014년 급성심장정지 의무기록조사수행 완료(566개 병원, 29,282건)
- '14.10.29: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교육 운영 지침 보급
- '15.9.14~16.6.14: '15년 급성심장정지 의무기록조사수행 완료(547개 병원, 29,959건)
- '15.10.6: 급성심장정지 및 중증손상(외상)조사 심포지엄 개최
- '15.12.04: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공개발표회 개최
- '16.10.10~17.8.25: '16년 급성심장정지 의무기록조사 수행 완료(505개 병원, 28,963건)
- '16.8.25: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
- '17.7.25~: '17년 급성심장정지 의무기록조사 수행 중(514개 병원, 28,629건)
- '17.9.26: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
- '17.12.7: 2006-2016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 발간 및 원시자료 공개
- '18.7.~'19.10: '18년 급성심장정지 의무기록조사 수행 완료(477개 병원, 30,179건)
- '18.11.22: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
- '18.11: 2006-2017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 발간
- '19.11.27: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
- '19.12: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 발간
- '20.12: 제9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온라인) 및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 '21.5: 제1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개최
- '21.11: 제10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

➔ 만성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13.2.5: 질병관리본부-대한의학회 양해각서(MOU) 체결
 - * 180여개 학회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와 만성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합의 도출 및 건강(질병)정보 개발의 수행 여건 확립
- '13.3~'20.12: 일차의료용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 8종 외 환자용, 일반인용 가이드라인 포함 8종 개발
 -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 '15.7: 공중보건, 임상, 방법론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 발족,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권고 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
- '17.1: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국가건강정보포털)」 사업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 '20.6: 「지역사회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권고(2017-2019 질병예방서비스권고)」 보급
- '21.2: 일차의료용 근거기반 만성질환(만성콩팥병, 소아 및 성인천식, 우울증) 권고 요약본 4종 개발 완료

2022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안내



질병관리청

